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20120073 / 2023-12-20 14:08:23

2024년 사업집행 계획서

사 업 명	2024년
	의성 점곡 선도산림경영단지
주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산림조합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사업집행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성 점곡 선도산림경영단지

○ 사업기간 : 2024. 01 ~ 2024. 12.

○ 사업내용 :

- 통합사업 실행, 설계

- 통합사업 실행(임도신설, 조림, 숲가꾸기 등)

- 운영협의회 운영 및 홍보활동

□ **교부받고자 하는 대행사업금액 : 761,782천원**

□ **자체부담액 :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761,782천원**

(국고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비로 인정되는 부분에 사용)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1/4분기	사업준비, 교부금 승인, 산주동의	
2/4분기	산림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 산주동의	
3/4분기	산림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 산주동의	
4/4분기	직접사업 완공 및 정산, 회계검사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 **보조사업의 효과**

○ 산림의 경제적 가치 및 공익적 기능 증대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산주중심의 성공적인 산림경영 모델제시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민간대행사업비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합 계		761,782	
노 무 비		134,701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 비	**소 계**	627,081	
	1.사업관리경비(1)	33,392	
	2.외주**사업비**(2)	134,929	
	3.직접사업비(3)	448,674	
일반관리비		10,086	(노무비+사업관리비) ×요율(%)

[붙임]예산편성 및 내역참조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해	**당**	**없**	음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붙임1]

○예산편성 및 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사업관리비				**178,179**	
1.1. 인건비(A)				**134,701**	
-직접인건비(경영팀장)	인	1	65,138	65,138	선도산림경영단지 경영전문인력 인건비 기준단가(2023년 기준)
-직접인건비(사업담당)	인	1	53,228	53,228	선도산림경영단지 경영전문인력 인건비 기준단가(2023년 기준)
-간접인건비		직노×요율	13.80%	16,335	토목공사제경비요율
1.2. 사업관리경비(B)				**33,392**	
(1) 여비교통비				6,000	
- 현장조사여비(팀장)	일	300	10	3,000	1개월 x 15일(임차차량) x 12월 (선도교육관외출장포함)
- 현장조사여비(담당)	일	150	20	3,000	1개월 x 15일 x 10월
(2) 차량비				12,492	
-렌트비	월	12	777	9,324	
-유류대	월	12	40L*4회/월	3,168	휘발유기준금액 1650원(변동단가적용)
(3) 소모품비	식	1	500	500	복사용지 등
(4) 교육훈련비	식	1	300	300	
(5) 도서인쇄비				200	
-각종설명회자료	식	1	100	100	
-도서구매 및 제본비	식	1	100	100	
(6) 수선비	식	1	3,500	3,500	
(7) 회의비				2,700	
-운영협의회 등	회	3	900	2,700	
(8) 홍보비	식	3	2,500	7,500	조림 대상지 입간판 설치
(8) 기타				200	
-통신비	식	1	100	100	
-증명서 발급비	식	1	100	100	
1.3. 일반관리비(C)		**(A + B)**	**6.00%**	**10,086**	토목공사제경비요율
1.4. 부가가치세(D)		(A+B+C)	0%	-	부가세 면세
2. 외주 사업비				**134,929**	
2.1. 세부설계용역비	식	1	29,279	29,279	산림사업표준품셈,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참고
2.2. 전문가위탁비	식	1	4,400	4,400	사업비정산
2.3. 산림사업비(조림사업)		1	101,250	101,250	낙엽송 9ha
3. 직접사업비				**448,674**	
3.1. 기반시설조성사업	식	1	357,466	357,466	임도 1.2km
3.2. 숲가꾸기사업	식	1	91,208	91,208	풀베기 24.7ha * 2회
통합사업비 계				**761,782**	

첨 부 : 산출근거 1부.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직접사업비 및 외주사업비 총괄내역

단위 : 천원

1. 직접사업비 내역

공종	사업구역	사업량(km/ha)	금액	비고
임도사업	의성 점곡	1.20	357,466	간선임도사업
풀베기사업	의성 점곡	49.4	91,208	연 2회
계			448,674	

2. 외주사업비 내역

공종	비목	사업량(km/ha)	금액	비고
임도사업	설계비	1.2	17,463	
임도사업	설계비	1.2	3,300	간선임도 설계변경비 (사업금액의 1%이내)
조림사업	설계비	9.0	3,130	
풀베기사업	설계비	24.7	5,386	
조림사업	산림사업비	9.0	101,250	직접사업비 20% 이상 외주발주
계			130,529	

첨 부 : 1. 임도사업 산출근거 1부.
2. 조림사업 산출근거 1부.
3. 풀베기사업 산출근거 1부. 끝.

임도사업 산출근거

단위 : km

1. 임도사업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명	사업량(km)	단가	금액	비고
임도사업	1.20	-	357,466,000	동변리 산56-2외
계			357,466,000	

2. 임도사업 설계비 산출

비목	사업량 (km)	단가	금액	비고
간선임도 실시설계비	1.20	-	17,463,000	
간선임도 설계변경비	1.20	-	3,300,000	**사업금액 1%이내**
계			20,763,000	

첨 부 : 1. 실시설계 산출기준 1부.

조림사업 산출근거

단위 : ha

1. 조림사업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명	사업량(ha)	단가	금액	비고
조림사업 (경제수)	9.00	-	101,250,000	낙엽송 (동변리 산76외 2)
계			101,250,000	

2. 조림사업 설계비 산출

비목	사업량 (ha)	단가	금액	비고
조림 실시설계비	9.00	-	3,130,000	
계			3,130,000	

첨 부 : 1. 실시설계 산출기준 1부.

풀베기사업 산출근거

단위 : ha

1. 풀베기사업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명	사업량(ha)	금액	비고
풀베기사업	49.40	91,208,000	동변리 산75외
			연 2회
계		91,208,000	

2. 숲가꾸기사업 설계비, 감리비 산출

비목	사업량 (ha)	단가	금액	비고
풀베기 설계비	49.40	-	5,386,000	
			5,386,000	

첨 부 : 1. 실시설계 산출기준 1부.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조림사업 실시설계 사업비 산출

사업면적		(9.00 ha)							
구분	항 목	수 량 (면적, 수량)	단위	품 (인원,수량,요율)	단위	단 가 (금 액)	종류	할인 · 할증	금 액
직접인건비	사전조사 · 확인	9.0	ha	0.05	인/ha	280,031	고급기술자	0%	126,014
	예정지정리조사								
	- 고급기술자	9.0	ha	0.10	인/ha	280,031	고급기술자	0%	252,028
	- 초급기술자	9.0	ha	0.10	인/ha	202,067	초급기술자	0%	181,860
	설 계 도 서 작 성	9.0	ha	0.20	인/ha	280,031	고급기술자		504,056
	소 계								1,063,958
직접경비	재 료 유 인 비	1	건	5	부/건	30,000	재료유인비		150,000
	재 료 비								
	- 페 인 트	9.0	ha	0.20	ℓ /ha	7,300	친환경성수성 페인트(ℓ)		13,140
	- 잡 품	13,140	원	10	%				1,314
	소 계								164,454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110%							1,170,353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446,862
총 원 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2,845,627
부 가 가 치 세		총원가 × 10%							284,562
합 계		천원미만 절사							3,130,000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건설 및 기타부문 활용

o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	할인.할증요소	단위작업 (%)			비 고
		사전조사	예정지조사	설계도서작성	
집단화정도	5.0ha 이상	0%	0%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풀베기 실시설계 사업비 산출

조림후 경과연수		1년차		2년차		3년차이상	계		
사업면적(ha)		9.0		15.7			24.7		
구분	항 목	수 량 (면적, 수량)	단위	품 (인원,수량,요율)	단위	단 가 (금 액)	종류	할인 · 증률	금 액
직접인건비	사전조사 · 확인	24.7	ha	0.05	인/ha	280,031	고급기술자	0%	345,838
	표 준 지 조 사								
	- 고급기술자	24.7	ha	0.04	인/ha	280,031	고급기술자	5%	290,504
	- 초급기술자	24.7	ha	0.04	인/ha	202,067	초급기술자	5%	209,624
	설계도서작성(1차)	24.7	ha	0.05	인/ha	280,031	고급기술자	0%	345,838
	설계도서작성(2차)	24.7	ha	0.05	인/ha	280,031	고급기술자	0%	345,838
	작업자교육	1.0	건	1.00	인/건	280,031	고급기술자		280,031
	소 계								1,817,674
직접경비	표 준 지 조 사	24.7	ha	0.130	톨/ha	5,000	황색테이프		16,055
	재 료 유 인 비	2	건	5	부/건	30,000	재료유인비		300,000
	소 계								316,055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110%							1,999,441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763,423
총 원 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4,896,593
부 가 가 치 세		총원가 × 10%							489,659
합 계		천원미만 절사							5,386,000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건설 및 기타부문 활용

o 할인.할증률 산정

할인.할증요소	단위작업 (%)			비 고
	사전조사	표준지조사	설계도서작성	
조림후 경과연수	0%	5%	0%	
집단화정도(3-5ha)	0%	0%	0%	
계	0%	5%	0%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내역서

1. 설계비 산출(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 예정공사비 : 총예정금액 - 부가가치세

→ 309,600,000 ÷ 1.1 = 281,000,000

○ 요율산출

구 분	업무별	공사비		비 고
		1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건설부문	실시설계	6.16	6.16	

※직선보간법 : $Y = y_1 - \frac{(x-x_2)(y_1-y_2)}{x_1-x_2}$ = 6.16

Y : 당해공사비요율 x : 당해금액

$y1$: 작은금액요율 x1 : 큰금액

$y2$: 큰금액요율 x2 : 작은금액

○ 적용요율 = 6.16%

○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의 10%의 범위에 대한 증감 6.16% × 0% = 0.00%

○ 요율 조정에 의한 적용요율 = 6.16% + 0.00% = **6.16%**

○ 제13조1항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요율의 1.35배 적용

○ 설계용역비

281,000,000 × 6.16% × = 17,309,600 원

17,309,600 원

2.추가업무비용 - 원

가) 각종측량비 - 원

나) 기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7조 항목에 있는 추가업무 - 원

3. 당해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 (1+2) 17,309,600 원

≒ 17,300,000 원

4. 손해배상공제료 (1+2) 163,000 원

1) 1단계 공제료 용역비 * 0.816% 141,168 원

2) 2단계 공제료 용역비 * 0.131% 22,663 원

5. 총용역비 17,463,000 원

실시설계용역비 17,300,000 원

손해배상공제료 163,000 원

소 계 17,463,000 원

부가가치세 원

합 계 17,463,000 원

본 문서는 산림조합 자산입니다. 반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2023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3. 7. 10. 입찰공고분부터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직노) x 율			[기타경비] (재+노) x 율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3.7	13.7	13.7	6.5	6.4	6.5
	7~12개월 (365일)	13.8	13.8	13.8	6.7	6.6	6.7
	13~36개월 (1095일)	13.7	13.8	13.7	6.8	6.7	6.8
	36개월 초과 (1096일)	13.9	14.0	13.9	7.1	7.0	7.1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3.3	13.3	13.3	6.8	6.7	6.8
	7~12개월 (365일)	13.4	13.4	13.4	7.0	6.9	7.0
	13~36개월 (1095일)	13.3	13.4	13.3	7.1	7.0	7.1
	36개월 초과 (1096일)	13.5	13.6	13.5	7.4	7.3	7.4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3.1	13.2	13.1	7.1	7.0	7.1
	7~12개월 (365일)	13.2	13.3	13.2	7.3	7.2	7.3
	13~36개월 (1095일)	13.2	13.2	13.2	7.3	7.3	7.3
	36개월 초과 (1096일)	13.4	13.4	13.4	7.7	7.6	7.7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3.1	13.2	13.1	6.3	6.2	6.3
	7~12개월 (365일)	13.2	13.3	13.2	6.5	6.4	6.5
	13~36개월 (1095일)	13.2	13.3	13.2	6.6	6.5	6.6
	36개월 초과 (1096일)	13.4	13.4	13.4	6.9	6.9	6.9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공사규모 (추정가격)	[일반관리비] (재+노+경) x 율		[이윤] (노+경+일) x 율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전문공사	
5억 미만	6.0	6.0	15.0
5억 - 30억 미만		5.5	
30억 - 50억 미만		5.0	
50억 - 100억 미만	5.5		12.0
100억 - 300억 미만		4.5	
300억 - 1000억 미만	5.0		10.0
1000억 이상	4.5		9.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직접공사비) x 율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요율	구분	요율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0.51
조경공사	0.1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32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그 외	0.1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일반건설공사(을)	3.09	
	중건설공사	3.43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중건설공사	2.35	5,400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일반건설공사(을)	2.10	
	중건설공사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주)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산재보험료]

(노) x 3.7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2020.12.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고용보험료]

(노) x 율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1등급] 1700억 이상	1.57
[2등급] 1700억 미만 ~ 950억 이상	1.30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1.13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1.06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1.03
[6등급] 220억 미만 ~ 140억 이상	1.02
[7등급] 14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1.01
7등급 미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8-146호, 2018.12.18.)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8-462호, 2018.7.26.)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직노) x 3.43	(건강보험료) x 11.52	(직노) x 4.5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퇴직공제부금비]

(직노) x 2.3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x 율

구분	요율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1.8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0.8
댐	1.1
택지개발	0.6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주택 외 건축	0.5
조경	0.3
기타토목(하천 등)	0.8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 x 율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50억 미만	0.081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300억 이상 중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300억 이상 중심·종평제(건축)	0.068
턴키·대안공사	0.084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수수료
70억 미만	[직공비x0.0141%]x공기(년)
70억 이상 - 120억 미만	[100만원+(직공비-75억원)x0.0102%]x공기(년)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150만원+(직공비-130억원)x0.0077%]x공기(년)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240만원+(직공비-250억원)x0.0063%]x공기(년)
500억 이상	[400만원+(직공비-500억원)x0.0050%]x공기(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 건설업의 분류**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중건설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